

의안
번호

522

경기도의회
제302회 임시회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5. 9. 22.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I. 심사경과	1
II. 제안설명의 요지	1
III. 검토보고	2
IV. 질의 및 답변요지	2
V. 토론요지	2
VI. 심사결과	2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9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8월 25일 / 9월 9일(수정 예산안)

나. 제 출 자 : 경기도교육감

다. 회 부 일 : 2015년 9월 15일

라. 상정일자 : 경기도의회 제302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9. 16.)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고

○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세입·세출 938억원이 증액된 수정 예산안을 2015. 9. 9. 제출하여 수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Ⅲ. 검토보고 : 별첨 1

(검토보고자 : 특별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전하식)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생략

Ⅵ.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내역 : 별첨)

[별첨 1]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I. 제안경위

- 안건명 :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출자 : 경기도교육감
- 제출일 : 2015년 8월 25일 / 9월 9일(수정 예산안)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고
 -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세입·세출 938억원이 증액된 수정 예산안을 2015. 9. 9. 제출하여 수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II.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개요

1. 예산편성 배경 및 사유

- 2015년도 도세 및 지방교육세 전입금 증가와 불용예상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했던 누리과정사업비 1,079억원(1개월 7일분)과 학교 신증설비,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 필요경비 추가 편성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금년 7월부터 교육급여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보장기관이 시군구에서 교육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음.

2.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2조 6,685억원 보다 2,742억원이 증액된 12조 9,427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1% 증가한 수준임.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억 원)

구 분	기정 예산액(A)	제3회추경 증감(B)				경정 예산액 (C=A+B)
		당초(a)	수정(b)	계(B=a+b)	비율%	
총 규 모	126,685	1,804	938	2,742	2.1%	129,427

Ⅲ.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1. 세입예산안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 총괄표 ◆

(단위: 억 원)

구 분	기정 예산(A)	3회 추경증감			경정예산 (C=A+B)	
		당초	수정	계(B)		구성비%
합 계	126,685	1,804	938	2,742	129,427	100
중앙정부이전수입	82,948	292	-	292	83,240	64.3
보통교부금	79,868	-	-	-	79,868	61.7
특별교부금	1,864	121	-	121	1,985	1.5
국고보조금	1,216	171	-	171	1,387	1.1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2,853	1,373	938	2,311	25,164	19.4
지방교육세전입금	15,773	1,117	297	1,414	17,187	13.3
시도세전입금	3,255	228	305	533	3,788	2.9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1,607	-	336	336	1,943	1.5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보전금	1,645	-	-	-	1,645	1.3
비법정이전수입	573	28	-	28	601	0.4
기 타 이 전 수 입	86	1	-	1	87	0.1
자 체 수 입	3,981	138	-	138	4,119	3.2
지 방 교 육 채	14,951	-	-	-	14,951	11.6
전 년 도 이 월 금	1,866	-	-	-	1,866	1.4

- 중앙정부이전수입 292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311억원, 기타이전수입 1억원, 자체수입 138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중앙정부이전수입 : 292억원 증액
 - 특별교부금 : 농어촌 우수학교 지원 외 11개 국가시책사업 121억원
 - 국고보조금 :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사업 171억원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 2,311억원
 - 법정이전수입 : 지방교육세 전입금 1,414억원, 시도세 전입금 533억원, 학교용지일반회계 부담금 336억원 등 당해연도 및 과년도 전입금 수입 2,283억원 증액
 - 비법정이전수입 :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사업 지방비 반영분 부담금 28억원(시도 4억원, 시군구 24억원) 증액
- 기타이전수입 : 도교육청 금고(농협)약정에 따른 사업지원금 1억원 증액
- 자체수입 : 138억원 증액
 - 재산매각대금(토지, 건물) : 5건 13억원
 - 예금이자수입(정기예금, 기타예금) : 3건 30억원
 - 2014년 누리과정 어린이집 반납액 39억원
 - 경기교육사랑카드 사용에 따른 복지기금 47억원
 - 기타 12건 9억원

2. 세출예산안

가. 부문별 현황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 부문별 총괄표 ◆

(단위: 억원)

구 분	기정예산(A)		제3회 추경증감(B)				경정예산 (C=A+B)		
		비율 (%)	당초	수정	계	비율 (%)		증감율 (%)	비율 (%)
합 계	126,685	100	1,804	938	2,742	100	129,427	2.2	100
1. 유아및초중등교육	120,919	95.4	1,931	938	2,869	104.6	123,788	2.4	95.6
가.인적자원운용	68,997	54.5	△23	-	△23	△0.8	68,974	0.0	53.3
나.교수-학습활동 지원	4,002	3.2	△42	-	△42	△1.5	3,960	△1.1	3.1
다.교육복지지원	12,663	10.0	1,482	-	1,482	54.1	14,145	11.7	10.9
라.보건/급식/체육 활동	5,302	4.2	8	-	8	0.3	5,310	0.2	4.1
마.학교재정지원 관리	17,279	13.6	118	-	118	4.3	17,397	0.7	13.4
바.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12,676	10.0	388	938	1,326	48.4	14,002	10.5	10.8
2. 평생·직업교육	99	0.1	-	-	-	0.0	99	0.0	0.1
가.평생교육	89	0.1	-	-	-	0.0	89	0.0	0.1
나.직업교육	10	0.0	-	-	-	0.0	10	0.0	0.0
3. 교육일반	5,667	4.5	△127	-	△127	△4.6	5,540	△2.2	4.3
가.교육행정일반	752	0.6	△3	-	△3	△0.1	749	△0.4	0.6
나.기관운영관리	715	0.6	-	-	-	0.0	715	△0.1	0.6
다.지방채상환및 리스료	4,064	3.2	△124	-	△124	△4.5	3,940	△3.0	3.0
라.예비비및기타	136	0.1	-	-	-	0.0	136	0.0	0.1

1)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총 12조 3,788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9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보다 2,869억원(2.4%)이 증액 편성되었음.

가) 인적자원 운용은

기정예산액 보다 23억원이 감액된 6조 8,97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용은

- 교원 인건비 : 보수 △414억원, 법정부담금 414억원
- 계약제직원 인건비 : 교육공무직원 정액급식비, 장애인 고용 부담금 △48억원
-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 새내기 교육행정 직무 연수 등 27개 연수비 조정 △1억원
- 비정규직 인사관리 : 장애인 고용 장려금 △2억원
- 교직원 복지 지원 : 경기교육사랑카드 교직원 연수비 28억원

나)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기정예산액 보다 42억원이 감액된 3,9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용은

- 창의인성교육 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2억원
- 사립유치원 지원 : 신·증설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 10억원
- 특수교육 복지 지원 :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7억원
-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14억원, 원어민교사 운영 △20억원
-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역량 제고 4억원,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시범운영 지원 4억원, 특성화고-대학-기업체연계프로그램 운영 3억원

- 학교정보화 기기 보급 및 관리 : 신·증설학교 교실정보화 기자재 예산 집행 절감 △24억원, 신·증설학교 교원용컴퓨터 보급 예산 집행 절감 △11억원
- 현장체험학습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체험학습비 지원 △3억원
- 대안교육 운영지원 : 대안교육단기위탁(특별교육이수) 경비 지원 △1억원
-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 관리 : 사회적배려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2억원, 사회통합 전형자 지원금 △1억원

다) 교육복지 지원은

기정예산액 보다 1,482억원이 증액된 1조 4,14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은

- 교과서 지원 : 고교 저소득층 학생 교과서 구입비 지원 △32억원, 의무교육 대상자 교과서 지원 224억원
-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 희망 장학금 지원 △3억원
- 기타 교육비 지원 : 교육급여 199억원
- 방과후학교 운영 :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 1억원
-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 : 농어촌 거점형 우수중학교 지원 14억원
-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 580억원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499억원

라) 보전/ 급식/ 체육활동은

기정예산액 보다 8억원이 증액된 5,31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은

- 학교급식 운영 : 학교급식 경비 지원 △65억원
- 학교 급식 환경개선 : 신설학교 급식기구비 73억원

마) 학교재정지원 관리는

기정예산액 보다 118억원이 증액된 1조 7,39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은

- 학교운영비 지원 : 세월호 희생자(실종자) 장례지원비(추가분) 1억원
- 인건비재정결함 지원 :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재정결함 지원 105억원
- 운영비재정결함 지원 :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 12억원

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기정예산액 보다 1,326억원이 증액된 1조 4,00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은

- 학교 신증설 : 신설유치원 시설비 5억원, 신설학교 내부 비품비 5억원, 신설학교 부지매입비(택지) 637억원, 신설학교 시설비 547억원
- 학교시설 증개축 : 일반학급 증설 교실증축 시설비 1억원, 특수학급 신·증설 증축 및 리모델링 시설비 △10억원
-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 원동초 수영장 신축 부족분 추가 10억원, 해솔초 특별교실 증축에 대한 연결통로 등 설치 4억원, 노후화장실 개선사업 75억원, 소규모 학교환경 개선사업 52억원

2) 교육일반 부문은

총 5,540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보다 127억원(2.2%)이 감액되었음.

가) 교육행정일반은

기정예산액 보다 3억원이 감액된 74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은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도입 △4억원, 교육행정전산망 시스템 운영 △1억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 공유재산 관리실태 전수조사 1억원
- 학생배치계획 관리 : 문산고 남녀공학개편에 따른 편의시설 개선 1억원

나)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기정예산액 보다 124억원이 감액된 3,9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은

- 지방교육채 상환 :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2013회계 차입금 △19억원, 2014회계 차입금 △24억원
- 민간투자사업 상환 : BTL 운영비 △30억원, 시설임대료 △51억원

나. 기관별 현황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 기관별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기정예산		제3회 추경증감			경정예산액	
	금액	구성비	당 초	수 정	계	금액	구성비
합 계	12,668,509	100.0	180,427	93,833	274,260	12,942,769	100.0
본 청	10,143,816	80.1	173,305	12,710	186,015	10,329,831	79.8
직속기관	36,321	0.3	△691	-	△691	35,629	0.3
교육 지원청	2,488,373	19.6	7,813	81,123	88,936	2,577,309	19.9

- 금회 추경예산액 12조 9,427억원의 기관별 세출예산의 구성비를 보면
 - 본청 79.8%, 직속기관 0.3%, 교육지원청 19.9%를 차지하고 있으며,
- 기관별 증감내역을 보면
 - 본청은 유아교육과 1,089억원, 학교지원과 369억원, 문예교육과 229억원, 복지법무과 150억원, 정책기획관 52억원, 교육급식과 31억원 등 12개 부서사업비 1,953억원이 증액되고, 교육과정정책과 32억원, 재무담당관 14억원 등 8개 부서사업비 93억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8%인 1,860억원이 증액되었고,

- 직속기관은 교육정보기록원 5억원 등 5개 기관의 사업비가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9%인 7억원이 감액되었으며,
- 교육지원청은 성남교육지원청 외 11개 교육지원청이 919억원 증액되고,
수원교육지원청 외 12개 교육지원청이 30억원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3.6%인 889억원이 증액되었음.

다. 성질별 현황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성질별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기정예산액		제3회 추경증감			경정예산액	
	금액	구성비	당 초	수 정	계	금액	구성비
합 계	12,668,509	100.0	180,427	93,833	274,260	12,942,769	100.0
인 건 비	5,628,761	44.4	△41,719	-	△41,719	5,587,042	43.2
물 건 비 ¹⁾	452,997	3.6	23,135	-	23,135	476,132	3.7
이 전 지 출 ²⁾	1,689,567	13.3	101,579	-	101,579	1,791,146	13.8
자 산 취 득 ³⁾	1,003,285	7.9	33,150	81,123	114,273	1,117,558	8.6
상 환 지 출 ⁴⁾	333,487	2.6	△9,392	-	△9,392	324,095	2.5
전 출 금 등 ⁵⁾	3,546,847	28.0	73,672	12,710	86,382	3,633,229	28.1
예비비및기타	13,567	0.1	-	-	-	13,567	0.1

○ 성질별 세출예산의 구성비를 보면

- 인건비 43.2%, 물건비 3.7%, 이전지출 13.8%, 자산취득 8.6%,
상환지출 2.5%, 전출금등 28.1%, 예비비 및 기타는 0.1%를 차지
하고 있음.

1) 물건비 :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경상교육지원사업비

2) 이전지출 : 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3) 자산취득 : 토지매입비, 건설비, 유형자산, 투자교육지원사업비

4) 상환지출 : 자입금이자, 민자사업지급금

5) 전출금 등 : 일반·기타특별회계전출금, 학교회계전출금

○ 성질별 증감내역을 보면

- 인건비는 교원인건비 414억원 과목 경정, 교수학습활동지원 3억원 등 417억원이 감액되었으며,
- 물건비는 인적자원운영 24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3억원, 교육 복지지원은 교과서 지원비 224억원 등 261억원이 증액되고, 지방채상환 30억원이 감액되어 23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 이전지출은 퇴직부담금 증가에 따른 교원인건비 과목경정 414억원과 교육급여지원과 누리과정 등 601억원 총 1,015억원이 증액되었고,
- 자산취득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179억원이 증액되고, 교수학습활동지원 33억원, 교육행정일반 3억원이 감액되어 1,14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 상환지출은 BTL 임대료 9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 전출금 등은 교육급여지원과 누리과정 등 657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47억원, 학교급식환경개선 73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17억원 등을 증액하고 인적자원운영 46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9억원, 학교급식운영 65억원을 감액하여 864억원을 증액함.

IV. 검토보고

□ 세입예산안

1. 중앙정부 이전수입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292억원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0.4% 증가한 8조 3,240억원임.

◆ 중앙정부 이전수입 현황 ◆

(단위: 억 원)

구 분	기정예산(A)	제3회 추경증감(B)		경정예산 (C=A+B)
			증감율(%)	
중앙정부이전수입	82,948	292	0.4	83,240
보통교부금	79,868	-	-	79,868
특별교부금	1,864	121	6.5	1,985
국고보조금	1,216	171	14.0	1,387

- 특별교부금 121억원은 지방채상환 91억원, 농어촌거점별 우수 중학교 육성지원 14억원, 특성화고 취업역량제고 8억원 등 12개 국가시책사업에 편성하였음.
- 국고보조금 171억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시군구에서 주관하던 '교육급여⁶⁾'가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되면서 교육부에서 교부된 보조금으로 교육급여사업에 편성하였음.

2.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2,311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법정이전수입 2,283억원, 비법정이전수입 28억원이 편성되었음.
- 증액된 법정이전수입 2,283억원은 지방교육세전입금 1,414억원과 시도세전입금 533억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336억원을 각각 편성한 것임.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15.7.1.부터 '교육급여'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보장기관이 시군구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변경됨.

- 비법정이전수입 28억원은 광역자치단체전입금 4억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24억원으로 교육급여 보장기관 변경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 수입임.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추경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억 원)

구 분		기정 예산(A)	제3회 추경증감(B)				경정예산 (C=A+B)	
			당초	수정	계	증감율(%)		구성비(%)
계		22,853	1,373	938	2,311	10.1	25,164	100
법정이전수입	소계	22,280	1,345	938	2,283	10.2	24,563	97.6
	지방교육세 전입금	15,773	1,117	297	1,414	9	17,187	68.3
	시도세 전입금	3,255	228	305	533	16.4	3,788	15.1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1,607	-	336	336	20.9	1,943	7.7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보전금	1,645	-	-	-	-	1,645	6.5
비법정이전수입	소계	573	28	-	28	4.9	601	2.4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573	4	-	4	0.7	577	2.3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	24	-	24	순증	24	0.1

3.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총 13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자체수입 현황 ◆

(단위: 백만원, %)

과목구분	기정예산(A)	제3회 추경증감(B)		경정예산(C=A+B)	
			비율(%)		비율(%)
계	3,981	138	100	4,119	100
교수-학습활동수입	3,083	-	-	3,083	75
행정활동수입	11	-	-	11	0.2
자 산 수 입	687	13	9.4	700	17
이 자 수 입	95	30	21.7	125	3
기 타 수 입	105	95	68.9	200	4.8

- 자산수입은 지평초, 소요초 등 5건의 토지·건물매각대금 13억원
- 이자수입은 정기 및 기타 예금이자 수입 3건 30억원
- 기타수입 95억원은 경기교육사랑카드 사용에 따른 복지기금 47억원, 2014년 누리과정 어린이집 반납액 39억원 등임.

□ 세출예산안

1. 누리과정 사업비 예산 지원 : 1,079억원 중액

- 누리과정 사업은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만3세부터 만5세 유아의 보호자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게 되었음.
- 2015년도 누리과정 사업 소요액 1조 303억원 중 본예산에 3,898억원(4개월 16일분), 제1회 추경에 인건비 절감분, 경기도 전입금으로 1,836억원(2개월 5일분), 제2회 추경에 국고목적예비비, 지방교육채로 3,490억원(4개월 3일분)을 편성하였으며, 금회 추경에 경기도 전입금과 불용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1,079억원(1개월 7일분)을 편성하였음.

◆ 누리과정 예산 현황 ◆

(단위: 억원)

구분	소요액	예산편성액					미편성액
		본예산	제1회 추경증감	제2회 추경증감	제3회 추경증감	계	
계	10,303 (12개월)	3,898 (4개월16일)	1,836 (2개월5일)	3,490 (4개월3일)	1,079 (1개월7일)	10,303 (12개월)	-
유치원	4,834	1,757	861	1,636	580	4,834	-
어린이집	5,469	2,141	975	1,854	499	5,469	-

※ 총소요액(10,303억원)에는 e-유치원시스템 5억 미포함

- 누리과정 시행 3년차인 금년도에는 3회의 추경을 거쳐 재원을 확보하는 등 재원마련대책이 미흡하여 학부모에게는 사업 지속성의 불안감과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2016년도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재원대책과 함께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여야 할 것임.

2.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 199억원 증액

- 교육급여 지원사업 199억원은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102억원, 입학금, 수업료 96억원, 금융정보제공동의 등 처리비 1억원임.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14.12.30.)으로 '15.7.1.부터 도교육청에서 시행하도록 변경되었음.
- 소관 변경으로 기관별 역할 및 업무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함.

◆ 교육급여 재원별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국 고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비법정전입금)		계	비 고
		광역시·도·시·군·구	기초자치단체		
금 액	171	4	24	199	

◆ 교육급여 지원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계
계	9,613	4,031	4,279	1,904	19,827
초등학생 (38,162명)	의무교육	의무교육	38,700원	-	1,477
예산액	-	-	1,477	-	
중학생 (28,016명)	의무교육	의무교육	38,700원	26,300원	1,821
예산액	-	-	1,084	737	
고등학생 (44,391명)	전액지원	90,800원	38,700원	26,300원	16,529
예산액	9,613	4,031	1,718	1,167	

3. 특별교부금(국가시책사업) : 31억원 증액

-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외에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재정지원을 하여야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가 있는 때, 재해로 인해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한 때 등에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금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특별교부금 사업 31억원은 국가시책사업 9건임.
 - 2015년 농어촌 거점형 우수 중학교 지원 14억원
 - 사회적배려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2억원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시범운영 4억원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교육지원 강화 4억원
 -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사업 2억원 등임.
 - 9개 사업 중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시범운영 등 4개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집행되었음.

◆ 특별교부금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합 계			3,120	
1	학교정책과	2015년 농어촌거점형우수중학교	1,423	
2	교육과정 정책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200	성립전 예산
3	민주시민 교육과	광복70년기념전국학생탐구토론대회	17	성립전 예산
4	특성화교육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시범 운영	409	성립전 예산
5	특성화교육과	특성화고-대학-기업체연계프로그램	285	성립전 예산
6	특성화교육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교육지원 강화	422	
7	문예교육과	창의적체험활동종합지원시스템(에듀팍)운영	223	
8	문예교육과	대학주도방과후학교(예비)사회적기업지원	94	
9	시설과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구축	47	

4.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사업 : 인건비 105억원, 운영비 12억원 증액

-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 대상은 사립 초·중·고·특수학교 247개교에 인건비 또는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액⁷⁾은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하여 그 부족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계상하여 산출함.
-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은 기정예산 6,830억원 대비 1.5%인 105억원이 증액된 6,935억원으로 금회 추경 예산편성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 105억원이 부족하여 추경에 반영한 것임.
-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은 기정예산 363억원 대비 3.2% 12억원이 증액된 375억원으로 증액사유는 교원보전수당이 2015.1.1.자로 폐지되고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비에서 교원연구비를 지급하게 되어 증액된 사항임.

◆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기관명	기정예산(A)	제3회 추경 증감액(B)		경정예산 (C=A+B)
				증감율(%)	
합계		719,315	11,696	1.6	731,011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 (명퇴수당 제외)	소계	682,992	10,545	1.5	693,537
	사립고	440,732	8,683	2	449,415
	사립초·중	180,238	249	0.1	180,487
	사립특수	62,022	1,613	2.6	63,635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금	소계	36,323	1,151	3.2	37,474
	사립초·중	28,087	747	2.7	28,834
	사립특수	8,236	404	4.9	8,640

7) 2015학년도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은 공립학교 수준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부족 될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한다.

- 재정결함보조금 = 기준재정수요액(세출) - 기준재정수입액(세입)
- 기준재정수입액(세입) = 입학금 + 수업료 + 법인전입금
- 기준재정수요액(세출) = 인건비 + 학교운영비

- '15년도 전체 지원액이 7,310억원으로 재정결합의 정확한 수요 조사는 물론 보조금의 적정 사용 감사, 학교운영관리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등이 사전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임.

5. 지방채 상환 : 43억원 감액

- 2015년도 지방교육채 차입금 상환 현황을 보면
 - 2013회계년도 차입금 3,379억원의 이율 변동(3.69%→2.84%)에 따른 이자 비용 18억원 감소
 - 2014회계년도 1차 차입금 5,298억원의 이율 변동(3.39%→2.69%)에 따른 이자 비용 19억원 감소
 - 2014회계년도 2차 차입금 4,093억원의 이율 변동(3.39%→3.21%)에 따른 이자 비용 5억원 감소로
 - 총예산액 441억원 중 43억원을 감액 신청함.

◆ 2015년도 지방교육채 차입금 상환 현황(이자상환) ◆

(단위: 백만원)

회 계 구분	발행 사유	차입금	차입일	2015회계 본예산		지방교육채 이자 상환			집행 잔액 (C=A-B)	상환 조건
				예산액 (A)	적용 금리	기 상환액	상환 예정액	합계 (B)		
합계		1,277,123		44,119		25,854	14,011	39,865	4,254	
2013	학교 신설	337,929	2014-02-28	12,469	3.69	10,633	-	10,633	1,836	2년거치/ 3년상환
2014	학교 신설	529,849	2014-09-30	17,962	3.39	8,669	7,423	16,092	1,870	5년거치/ 10년상환
2014	2009 지방채 차환	409,345	2014-12-24	13,688	3.39	6,552	6,588	13,140	548	5년거치/ 10년상환

6. 학교신증설사업 : 1,183억원 증액

가.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 637억원 증액

◆ 신설학교 부지 매입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액	제3회 추경예산			경정예산액
		당초	수정	계	
합 계	221,509	29,979	33,754	63,733	285,242
본 청	113,532	27,077	-	27,077	140,609
교육지원청	107,977	2,902	33,754	36,656	144,632

-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당초 감정1초 등 12교 299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법정전입금 추가 전입에 따라 수정예산으로 위례7초 등 9교 337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637억원이 증액된 2,852억원으로 편성하였음.

◆ 제3회 추경 분할상환금 편성 및 할인액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연번	학교명	시행자	개교일	3회 추경	선납할인액
합 계					63,714,225	3,498,086
분 할 상 환	1	감정1초	민영	17.03	△1,376,763	1,376,763
	2	위례5중	LH공사	16.03	5,135,792	231,607
	3	삼송5초	LH공사	16.03	1,692,557	31,915
	4	삼송초	LH공사	14.03	△29,061	29,061
	5	창곡고	LH공사	16.03	4,204,453	100,729
	6	방축고	LH공사	16.03	1,455,998	38,077
	7	학암고	LH공사	16.03	4,358,311	104,415
	8	별내1고	LH공사	16.03	2,400,175	51,965
	9	운정1고	LH공사	16.03	7,311,296	86,545
	10	화성특수	LH공사	16.03	7,328,154	196,624
	11	위례7초	LH공사 외	16.03	4,750,605	182,595
	12	위례8초	LH공사 외	16.03	4,687,818	180,182
	13	위례9초	LH공사 외	16.09	4,813,390	185,010
	14	위례10초	LH공사 외	16.03	4,759,369	214,631
	15	위례4중	LH공사 외	16.03	5,188,955	199,445
	16	소사벌2초	LH공사	16.03	2,211,838	71,998
	17	낙양4초	LH공사	16.03	1,965,097	80,370
	18	새말중	LH공사	16.03	2,856,241	136,154

- 부지매입비 분할상환금은 개발사업 시행자와 3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계약하여 매년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도분 법정전입금이 금년도에 전입됨에 따라 내년도에 지급해야할 위례5중 등 18교의 2016년도분 부지매입비를 편성하였음. 내년도 지급 시 672억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금년도에 선납지급함에 따라 선납할인액 35억원이 절감된 637억원을 편성하였음.

나. 신설학교 시설비 : 546억원 증액

◆ 신설학교 시설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액 (A)	제3회 추경예산(B)			경정예산액 (C=A+B)
		당초예산	수정예산	계	
합 계	354,924	7,257	47,369	54,626	409,550
본 청	11,033	-	-	-	11,033
교육지원청	343,891	7,257	47,369	54,626	398,517

- 신설학교 시설비는 당초 추경예산에 위례9초 등 4교 7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법정전입금 추가 전입에 따라 수정예산으로 상신2초 등 4교 시설비 474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46억원이 증액된 4,096억원을 편성하였음.

◆ 제3회 추경 신설학교 시설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학교명	개교일	예산액	비고
합계			54,626	
재정사업	소계		53,655	
	위례9초(성남)	16.9월	7,286	총 공사비 151억원 중 부족액 72억원 편성
	소사벌2초(평택)	16.3월	△ 1,000	집행 잔액 감액
	상신2초(화성)	17.3월	14,914	
	남양3초(화성)	17.3월	17,120	
	역동초(광주)	16.10월	1,884	총공사비 149억원 중 부족분 추경편성
	감정1초(김포)	17.3월	13,451	
무상공급	소계		971	
	군자5초(시흥)	17.9월	392	설계비
	갈매초(구리)	17.9월	579	설계비

- 재정사업은 위례9초 추가 소요액 73억원, 상신2초 등 3교 455억원, 역동초 추가 소요액 19억원을 증액하고 소사별2초 시설비 집행잔액 1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 무상공급⁸⁾지역 신설학교는 '군자 배곧 신도시'지역 군자5초와 '구리 갈매보금자리'지역 갈매초 학교설계비 10억원을 추경에 반영함.
- 신설학교 개교는 교육기반 시설이 완벽하게 구축된 상태에서 개교하여야 하므로 금회 추경에 반영된 상신2초 등 3교는 조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7. 교육환경 개선사업 : 127억원 증액

◆ 교육환경개선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액	제3회 추경예산			경정예산액
			당초예산	수정예산	계	
본 청	합계	64,206		12,710	12,710	76,916
	정책기획관	15,074	-	5,200	5,200	20,274
	시 설 과	49,132	-	7,510	7,510	56,642

-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당초 미편성하였으나 법정전입금 추가 전입에 따라 수정예산으로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비 52억원, 노후화장실 개선사업 75억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127억원이 증액된 769억원으로 편성하였음.
-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초·중·고와 특수학교 시설환경개선 및 교육기자재 취득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 실태조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시행하여 예산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지역 간 시설 격차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사무실 협소 등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역교육지원청은 사무실 재배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교직원 근무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8) 재정사업 중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는 공영개발 사업으로 설치되는 학교시설사업을 통칭하는 용어로 '무상공급'이라고 표현함. ※관련근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①수도권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소공원 및 조경녹지를 포함한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시·도교육청에 무상공급하여야 한다.

④ 도시공원 및 녹지를 축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노후화장실 개선사업비는 화변기 설치율 70% 이상인 공립 초등학교 71교 481동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총17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제1회 추경에 1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금회 추경에 부족분 24개교 75억원을 편성함.

◆ 초등학교 노후화장실 개선사업비 현황 ◆

(단위: 억원)

급 별	총 소요액			1회 추경		제3회 추경	
초등학교	학교수	물량	금액	학교수	예산액	학교수	예산액
	71	481	175	58	100	24	75

- 금회 추경에 반영된 시설비는 객관적인 우선순위 선정과 함께 조기 집행하여 사고이월 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

8. 10억원 이상 증액 사업

◆ 10억원 이상 증액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기정예산액	경정예산액	증 감	비고
합계	189,695	221,074	31,379	
교직원복지지원 (경기교육사랑카드 교직원연수)	-	2,772	2,772	
사립유치원 지원	47,624	48,632	1,008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6,326	7,442	1,116	
교과서 지원	96,588	115,771	19,183	
학교급식환경개선	39,157	46,457	7,300	

- 경기교육사랑카드 교직원 연수는 경기도교육감, 농협, 비씨카드사와 제휴 계약에 따라 경기도교육사랑카드 회원들의 사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복지기금으로 지급받아 교직원 및 학생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으로 복지기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였으나, 감사원 감사결과⁹⁾에 따라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한 것으로 복지기금은 교직원 문화탐방을 위한 연수비 28억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함.

9) 감사원 '지방교육재정운영 감사결과'(2015.5.12.~7.10.)

경기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에 따라, '경기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운영위원회'(2015.7.17.개최) 에서 경기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결산 잔액 28억원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토록 의결 함.

- 사립유치원 지원은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담임수당 11만원, 교직수당 25만원, 인건비 보조 15만원을 지원해 왔으나 금회 추경에 사립유치원 신·증설로 교원수가 증가되어 추가 소요액 10억원을 편성함.
-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시범운영지원 2교 4억원, 특성화고·대학·기업체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3억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지원 강화를 위하여 50교에 4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직업교육을 산업수요 중심으로 전환하여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자함.
- 교과서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과서 구입비 22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고교 저소득층 학생의 교과서 구입비 지원이 ‘교육복지’ 사업으로 지원됨에 따라 32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금회 추경에 192억원을 편성함.
- 학교급식환경개선 73억원은 신설학교 급식기구 확충비로 유·초·중·고·특수학교 32교 개교와 동시에 급식이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금회 추경에 73억원을 반영함.
- 금회 추경에 반영된 증액사업은 신규사업도 있으나 당초 세입 부족을 이유로 미반영된 사업의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2016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의무지출경비¹⁰⁾ 등 필요경비가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10)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2015.8.26.)에 의무지출경비 예산 계상 조항을 신설함.

제10조(의무지출경비 등) 시·도교육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의무지출경비 등 다음 각호의 경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한 공무원 및 기타직의 봉급, 제 수당 및 법정부담금 (맞춤형복지비를 포함한다.)
2.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배상금, 보전금, 변상금, 포상금 등
3.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게 지급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
4. 법령, 조약, 협정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국제부담금 등 교육비특별회계 부담금
5.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출연금
6. 차입금 및 민자사업 지급금 등 채무 상환지출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8. 국고보조사업비

9. 1억원 이상 감액사업

-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1억원 이상 감액 요구한 사업은 학교급식 경비지원 등 14건으로 총 285억원을 감액 요구하였음.

◆ 1억이상 감액요구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 산 내 역				감액사유
		경정 예산(A)	기정 예산(B)	감액 (C-A-B)	감액 비율%	
합계		1,025,182	1,053,707	△28,525	△27%	
학교 지원과	교실증개축 시설비	51,175	52,081	△906	△2%	·일반학급 증설교실 증축시설비:신백현초 등 2교의 교실증축 설계변경에 따른 410,000천원 감액(내진설계 및 복도면적 감소에 따른 설계변경) ·특수학급 신증설증축 및 리모델링시설비: 모락고 기존교실 재배치에 따른증축계획변경(당초:5실증축→변경:1실증축, 특수학급3학급 인가예정→2학급증설 요청)
복지 법무과	교육실무 직원인건비	133,490	138,245	△4,755	△3%	·1~2월분 정액급식비 미집행잔액감액, 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 잔액감액
복지 법무과	교육실무 직원관리	478	650	△172	△26%	·장애인고용 장려금 집행 예상 잔액 감액
교육 급식과	학교급식 경비지원	412,185	418,678	△6,493	△2%	예산편성 대비 학생수 및 실제 급식일수(메르스 휴업 등) 감소에 따른 감액
특성화 교육과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31,369	32,734	△1,365	△4%	·대규모학교(40학급이상)에 2명씩배치된 학교의 경우, 자연감소에 따라 1명씩 배치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함께 배치된 농산어촌 학교 중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배치하지 않음(자연감소)
특성화 교육과	원어민교사 운영	8,009	10,058	△2,049	△20%	원어민등급차이, 고용계약기간상이,각종수당및지원차이,사업중단요청교(1개교)에따른 잔액발생
특성화 교육과	교실정보화 기자재보급	3,093	5,515	△2,422	△44%	·다수공급자(MAS)2단계경쟁계약방식으로 조달단가대비50~70%가격결정 ·신·증설교의학급수 감소로 실제 보급 수량 조정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 산 내 역				감액사유
		경정 예산(A)	기정 예산(B)	감액 (C=A-B)	감액 비율%	
특성화 교육과	교원용 컴퓨터 보급	2,910	4,008	△1,098	△27%	·다수공급자(MAS)2단계경쟁계약방식으로 조달단가대비50~70%가액결정 ·신·증설교의교원수 감소로 보급수량감소
특성화 교육과	특성화고 장학금지원	26,282	26,546	△264	△1%	지원대상 학생수 감소
학생 안전과	현장체험 학습지원	784	1,138	△354	△31%	·세월호및메르스사태발생으로2015년현 장체험학습을자제하는학교가늘어남 ·메르스사태발생으로일선학교현장체험 학습계약취소및변경에따른위약금지원
시설과	BTL운영비	69,917	72,893	△2,976	△4%	본예산 편성시 예상 물가상승률보다 실제 물가상승률이 낮아 운영비 일부 감액
시설과	시설임대료	284,230	289,368	△5,138	△2%	본예산 편성 시보다 예상 국고채 금 리가 실제 국고채 금리가 낮아 시설임 대료 일부 감액
진로 지원과	대안교육 단기위탁 경비지원	292	405	△113	△28%	전년도 대비 특별교육 이수 위탁대상자 감소로 인한 감액
경기도 교육정보 기록원	업무관리 시스템 운영	968	1,388	△420	△30%	·업무관리시스템응용SW유지보수비집행 잔액감액(△21,055천원) ·개인정보솔루션 장비도입사업취소 (△399,260천원)

- 교실증개축 시설비 9억원은 신백현초 등 2교의 교실증축 설계변경과
모락고 인가 특수학급 감축에 따른 교실 증축계획 변경으로 감액함.
- 교육실무직원인건비 48억원 감액은 교육공무직원 임금협약이
2015.3월 체결됨에 따라 1~2월 정액급식비 미집행 잔액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후 집행잔액을 감액함.
- 교육실무직원관리 2억원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납부 후 집행잔액으로 감액함.
- 학교급식경비지원 65억원, 현장체험학습지원 4억원 감액은 메르스 사태
발생 등으로 급식 일수 감소, 지원자 감소 등으로 감액함.
- 영어회화전문강사 인건비 14억원과 원어민교사 운영비 20억원은
사업시행방법 변경으로 인한 발생잔액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함.

- 교실정보화 기자재보급 24억원과 교원컴퓨터 보급 11억원 감액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¹¹⁾방식으로 입찰한 결과 단가대비 50~70%로 가격이 낮게 결정되어 낙찰 차액 35억을 감액함.
-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3억원과 대안교육 단기위탁 경비지원 1억원은 지원 대상자 감소로 감액함.
- BTL운영비 30억원은 본예산 편성 시 예상물가상승률(약5%)보다 실제 물가상승률(약1%)이 낮아져 운영비 일부를 감액함.
- 시설임대료 51억원은 본예산 편성 시 예상 국고채 금리(약5.52%)보다 실제 국고채 금리(약3.12%)가 낮아져 시설임대료 일부를 감액함.
- 업무관리시스템 운영비 4억원은 교육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시·도 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 업무협의회' 회의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솔루션 장비도입 사업을 중단하여 감액함.

V. 참고자료

1. 도 · 교육청 추경예산(안)분석(예산정책담당관):141~152p

- 1) 도 - 교육청간 법정경비 전출입 금액 차이 발생
 - 경기도 제2회 추경 지방세수입 증가분 등에 대한 도와 교육청간 법정경비 전출입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전출입 차액(939억)에 대하여는 교육청 제4회 추경에 반영하거나 금회 추경에 의회에서 추가로 세입을 반영할 필요 있음
 - 향후 도와 교육청간 전출입 경비는 양 기관의 예산안 확정 전에 확인 절차 필요

1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의 1회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격 또는 가격 및 기타사항(납기지체율, 본사 및 공장소재지 등)에 대하여 5개 이상의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요청을 하고, 해당 조달업체는 수요기관의 제안 요청사항에 대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수요기관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조달업체를 선정하여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구매하는 제도

2) 누리과정사업비 마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도교육청 누리과정 사업예산을 총4회에 걸쳐 예산편성
 - 누리과정 소요액 10,303억원: 본 예산시 3,898억원(38%), 1차 추경시 1,836억원(18%), 2차 추경시 3,490억원(34%), 제3차 추경시 1,079억원(10%) 편성
- 안정적인 누리과정 사업 운영을 위한 대안 마련
 - 누리과정 예산의 미반영분은 도내 학부모의 불안감을 증가시키는 요소임.
 - 이에 안정적인 누리과정 사업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재원 마련 방안 필요

3) 교육급여 신규 추진에 따른 세밀한 업무처리 필요

- 기존 보건복지부 국비지원으로 시군구에서 시행하던 교육급여 지급이 도교육청에서 직접 교부하는 신규사업으로써 아래와 같은 주의 필요함.
- 기관별 역할 및 업무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필요
 - 학교는 학생 전출·입, 퇴학, 제적 등 학적 변동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
 - 읍면동의 경우 교육급여 상담 및 신청 접수 및 시군구 자료 이송
 - 시군구의 경우 교육급여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 실시,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으로 전송
- 추가적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및 나이스로 학적관리가 어려운 수급자가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필요

4)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정확한 수요조사 반영 필요

- '15년 기정예산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 6,83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올해 초 사립학교 인건비 신청금보다 부족하게 편성되어 그 부족분 105억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함.
- 세출예산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편성(지방재정법 제36조) 해야 하나,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 과정 미흡함
 - 차후, 예산 편성시에는 사전 치밀한 수요조사에 따른 사학 인건비를 편성하여 건전한 사학 운영 도모 필요.
- 또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학교경영기관은 재정결함 보조금 감액 및 기타 목적 사업비 지원 배제 등 도교육청의 납부제고 방안 마련 필요.

- 5)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교원연구비 교육청 자체 근거규정 마련 필요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는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학생의 교육 여건 개선 및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
 - 본 추경은 이들 순회교사 81명에 대한 교원연구비(55,440천원)를 지원하기 위한 편성분임
 - 현재, 「교원에우에 관한 규정」 제9조(교육연구비용의 지원)은 마련되어 있으나, 교육청 자체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 먼저, 교육청 근거 규정 마련 후 순회교사 교원연구비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 교원연구비 지급(미지급) 시도교육청 현황
 - 지급 시도교육청(11개):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충북, 전남, 경북
 - 미지급 시도교육청(6개): 경기, 전북, 경남, 부산, 울산, 제주

2. 교육위원회 : 예비심사보고서 참고(별도 자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위 : 천원)

[세입]

부서명	평성구분	예산서 페이지	과 목	기정예산액 ㉑	추경요구액 ㉒	조정액			경정예산액 (㉑+㉒-㉓+㉔)	내역
						감액 ㉓	증액 ㉔	추경수정액 (㉒-㉓+㉔)		
	합계			12,668,509,070	274,260,015	-	3,150,000	277,410,015	12,945,919,085	
	3회 추경		광역자치단체전입금	57,254,000	414,383		3,150,000	3,564,383	60,818,383	○ 학교급식 관련 부대시설 및 급식기구 위생실태 개선사업 13억원 ○ 학교 운동장 내 노후 체육·놀이시설 개 선사업 15억원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지원 5천만원 ○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3억원
			기타총세입	12,611,255,070	273,845,632	-	-	273,845,632	12,885,100,702	

[세출]

(단위 : 천원)

부서명	편성구분	예산서 페이지	세세부사업명	기정예산액 ㉑	추경요구액 ㉒	조정액			경정예산액 (㉑+㉒-㉓+㉔)	내역
						감액 ㉓	증액 ㉔	추경수정액 (㉒-㉓+㉔)		
합계				12,668,509,070	274,260,015	-	3,150,000	277,410,015	12,945,919,085	
교육급식과	3회 추경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39,157,100	7,300,000	-	1,300,000	8,600,000	47,757,100	급식식당이 없는 학교 환경개선사업
체육건강교육과	3회 추경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343,000	-	-	750,000	750,000	1,093,000	노후 체육시설 교체(초등 160교)
안전관리과	3회 추경		교육시설안전개선	-	-	-	750,000	750,000	750,000	노후 놀이시설 교체(초등 68교)
특성화교육과	3회 추경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	-	-	50,000	50,000	50,000	청소년노동인권교육지원
수원교육지원청	3회 추경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	-	-	300,000	300,000	300,000	영화초 체육관
			기타세출	12,629,008,970	266,960,015	-	-	266,960,015	12,895,968,985	